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49
----------	----

제출년월일 : 1996. 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영업용차량(택시·버스)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불편신고사항을 공정·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심의위원회의 기능(교통민원신고사항에 대한 가·부결정) - (안 제 2 조)
- 위원회의 구성(공무원 4명, 민간인 6명) - (안 제 3 조)
- 심의위원회의 임기(1년, 연임가능) - (안 제 5 조)
- 심의위원회 개최(월1회) - (안 제 6 조)
- 민간인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 합의사항 : 없음
- 예산조치 : 민간인 심의위원회위원에 대한 수당지급('96년도 예산반영)

조례(안) : 붙임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 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사항의 신

고를 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법규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
2.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수사업법규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제반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운수지도계장
2. 교통과징계장
3.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화물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영동지부의 임직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각1명.
4. 구청장이 교통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2명.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하여 놓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가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확인(가결) 또는 확인불가(부결)로 분류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인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확인불가(부결) 처리한다.

③ 위원장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효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실행위로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확인불가 처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위원회에서 처리된 결과는 반드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전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상정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2. 7.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월 2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6년 1월 2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4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6년 2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가. 제정이유

- 영업용 차량(택시버스)의 불리한 운영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불편신고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심의위원회의 기능(교통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가·부결정) - (안 제 2 조)
- 위원회의 구성(공무원 4명 민간인 6명) - (안 제 3 조)
- 심의위원회의 임기(1년 연임가능) - (안 제 5 조)
- 심의위원회의 개최(월 1회) - (안 제 6 조)
- 민간인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 (안 제12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재한)

- 대중교통 또는 영업용 차량버스(버스·택시)등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 또는 법규위반 행위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통민원 신고위

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시민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쌍방의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인정됨.

- 조례명을 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는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조례는 구성이 아니라 설치가 맞다고 생각되어 영등포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로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조언·권고·건의·심의 등 위원회를 둘 경우 “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명 및 시행일에 대하여 수정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조례명중 위원회구성을 위원회 설치로 함.
-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49
----------	----

제출년월일 : 1996. 2. 7.

제 출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조언·권고·건의·심의 등 위원회를 둘 경우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명 및 시행일에 대하여 수정함.

2. 수정 주요골자

- 조례명중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설치”로 함.
-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제명과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중 “구성”을 “설치”한다.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